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662호
- 나. 발 의 자 : 김정태 의원 외 12명
- 다. 발의일자 : 2019년 5월 23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5월 24일

2. 제안이유

- 대표이사가 공석인 경우에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이므로 책임경영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바, 진흥원 내부에서 직무대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사 및 감사의 비상근 조항을 삭제하여 진흥원의 자율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비상근 규정 삭제(안 제7조제4항 삭제).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의 상임이사를 대표이사roman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복수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과 책임경영 약화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산업진흥원 이사 현황과 문제점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는 산업진흥원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해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직으로 규정하고 있음(제7조).
- 현재 산업진흥원의 이사는 총 9명으로, 대표이사와 노동이사를 포함한 선임직이사 6명과 정관에서 규정한 3명의 당연직이사¹⁾로 구성되어 있음(이사현황은 붙임자료 1 참고).
- 산업진흥원의 유일한 상임이사인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정관 제13조 제2항).²⁾

1)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제9조 제2항에서는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시 재정기획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당연직이사로 정하고 있음.

2)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제9조(임원의 임면) ② 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

- 이러한 직무대행 규정에 따라 직전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사임해 현행 대표이사의 임명까지 약 9개월 동안(2018.2.19.~2018.11.1.) 대표이사 공백상태에 있었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진흥원 기관장의 평균 공석 기간이 5개월에 달했음.

<최근 산업진흥원 대표이사의 공석기간>

대표이사	재임기간	공석기간
심일보	2007.07.01 ~ 2010.06.30	약 7개월
변보경	2011.02.16 ~ 2012.03.02	약 2개월
이전영	2012.05.15 ~ 2015.05.14	약 2개월
주형철	2015.07.01 ~ 2018.02.13	약 9개월
장영승	2018.11.01. ~ 현재	

- 이처럼 직무대행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직무대행자인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의 업무 부담과 책임이 가중되었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제기되었음.
- 이에 기관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임명권 행사와 함께 불합리한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어 왔음.

분하며, 선임직이사에는 근로자이사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3.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제13조(임원의 직무)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그 동안 산업진흥원은 직무대행자를 내부인사로 변경하려고 개선을 검토하였으나,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은 등기이사(임원)의 자격이 필요하므로 내부직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이 있어 현재 단일 상임이사 체제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임.
- 한편, 서울의료원과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서울시의 모든 출자·출연 기관에서 상임이사는 기관장 1명이고, 기관장의 직무대행을 대부분 당연직이사인 서울시의 국장이 맡도록 하고 있음³⁾.
- 이처럼 서울시의 담당국장이 출자·출연기관의 당연직이사로 참여하고, 출자·출연기관 장의 부재시에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라는 차원에서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출연기관에 대해 기관의 규모와 업무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당연직이사인 서울시의 국장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성과 경영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함.

다. 이사 및 감사의 비상임 규정 삭제(안 제7조 제4항)

3) 서울연구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음.

- 개정안은 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서울시의 담당 국장이 아닌 기관내부의 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와 감사의 비상임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 특히, 고유업무의 성격이 정형적이고 안정적인 다른 출자·출연기관들과 달리, 산업진흥원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혁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입법 후에는 상근이사의 숫자가 산업진흥원의 정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증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본 개정안에 대해 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상근직 임원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제안하고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02-2180-8055

SBA 이사회 명단

(2019.5.17 현재)

직 위	소속 및 직 위	성 명 (선임일)	주 요 경 력
이사장 (선임직)		(공 석)	
대표이사 (선임직)	대표이사	장영승 (2018.11.1)	·진인사컴퍼니 대표이사 ·도레미레코드 대표이사 ·나눔기술 대표이사
이 사 (당연직)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 기획관	김태희 (2018.1.1)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 사회적기업과장
이 사 (당연직)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이병한 (2019.1.1)	·금천구청 부구청장 ·서울시 국제협력관 ·서울시 경영기획관
이 사 (당연직)	서울지방중소 벤처기업청장	박영숙 (2019.2.8)	·교육복지국 교육복지과장 ·학교정책관실 교원정책과장 ·경북대학교 사무국장
이 사 (선임직)	네오팩트 대표	반호영 (2019.3.4)	·고구려TV 기획 이사 ·삼성전자 VD사업부 기술기획 그룹 대리
이 사 (선임직)	(주)유아이 대표	윤소라 (2019.3.4)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동도물산 기술개발영업부 부장
이 사 (선임직)	옐로우독 대표	제현주 (2019.3.4)	·카알라일 그룹 아시아 바이아웃펀드 Vice President ·맥킨지앤컴퍼니 전략컨설팅 Associate
이 사 (선임직)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 대학원 특임교수	윤종영 (2019.5.17)	·Taos,Inc. Sr.Consultant ·Mirakle51,Inc CEO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산학 협력교수
노동 이사 (선임직)	서울 산업진흥원 노동이사	강주현 (2017.3.2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학연지원센터 평가관리팀장 ·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 초빙교수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부의장
감 사 (선임직)	우덕회계법인 이사	변석준 (2019.3.4)	·안진회계법인 R&D 이사 ·삼일회계법인 Global Service/K&D SM
감 사 (당연직)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2018.1.1)	·서울시 문화융합경제과장 ·서울시 세제과장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구분	의료원	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설립목적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해 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질향상과 보건의료사업 발전에 기여	-지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전문적 조사·연구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동을 원활히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설립근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연구원육성조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설립일	'82. 9. 30.	'92. 10. 1.	'98. 3. 31.	'99. 6. 7.	'99. 7. 1.
대표자(임기)	김민기(63년생) ('18. 6. 1.~ '21. 5. 31.)	서왕진(64년생) ('17. 4. 28.~ '20. 4. 27)	장영승(63년생) ('18. 11. 1.~ '21. 10. 31)	한종관(58년생) ('18. 9. 21.~ '21. 9. 20.)	김성규(63년생) ('18. 9. 21.~ '21. 9. 20.)
조직	4부 1사업단 9센터 25진료과 4실 21팀 1연구조 1위원회	감사실 1본부 6실 3센터	1실 7본부 32팀 (31팀, 1센터)	2부문 2실 5부 1센터 / 4지역본부 18지점 1센터	3본부 1실 15팀 9예술단
정원내	정원 (무기계약 포함)	1,542명	225명	431명	367명
	현원 (무기계약 포함)	1,442명	219명	423명	340명
정원외	무기	-	-	-	153명
	기간제	132명	57명	13명	78명
	단시간	-	5명	3명	-
이사	정원	13명	15명	15명	8명
	현원	10명	12명	8명	8명
감사	정원	1명	2명	2명	1명
	현원	1명	2명	2명	1명
'19 예산	본 예산	1,865억원	387억원	1,696억원	1,227억원
	추경 예산	-	-	-	-
서울시출연기관	~'18(누적액)	661억원	2,848억원	3,904억원	3,769억원
	'19	186억원(보조금)	298억원	531억원	66억원
주요사업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수행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	-연구 사업 · 자체 과제 · 수탁 과제 · 협약 과제 -공개학술행사 -국내외 협력사업	-원스톱 창업지원을 통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국내외 판로지원을 통한 기업매출증대 지원 -기업인재 양성 및 채용지원 -R&D지원 및, 지식재산화 지원 등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에너지 효율성 및 우수 콘텐츠 육성 등 콘텐츠산업활성화 -산업거점 기반조성 및 거점별 활성화	-신용보증지원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	-세종문화회관 운영 -공연 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보급 -문화예술 관계 자료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법인의 운영보존 자금의 적립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울시 위탁사업 -기타 문화시설운영과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구 분	여성가족재단	복 지 재 단	문 화 재 단	시립교향악단	디 자 인 재 단	
설립 목적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	-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	
설립 근거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설립일	'02. 1. 10.	'03. 12. 31.	'04. 3. 15.	'05. 6. 1.	'08. 12. 16.	
대 표 자 (임기)	강경희(59년생) ('16. 3. 7.~ '19. 3. 6.)	홍영준(74년생) ('18. 9. 21.~ '21. 9. 20.)	김대일(66년생) ('18. 9. 20.~ '21. 9. 19.)	강은경(70년생) ('18. 3. 1.~ '21. 2. 28.)	최경란(62년생) ('18. 4. 16.~ '21. 4. 15.)	
조 직	3실 8팀	1실 1센터 1지원단 3본부 1실	2실 4본부 1지원단 1극장 16팀	1본부 4팀 1감사역 1예술단	4본부 1실 1역 2센터 1사무국	
정원내	정원	114명	170명	181명	147명	
	현원	108명	153명	161명	130명	
정원외	무기	-	-	-	4명	
	기간제	34명	20명	27명	14명	
	단시간	-	-	-	-	
이사	정원	21명	10명	15명	15명	
	현원	11명	9명	14명	13명	
감사	정원	2명	2명	2명	1명	
	현원	2명	1명	1명	1명	
'19 예산	본 예산	128억원	381억원	699억원	206억원	599억원
	추경 예산	-	-	-	-	-
서울시 출연금	~'18 (누적액)	866억원	2,823억원	2,677억원	1,595억원	1,868억원
	'19	89억원	324억원	501억원	136억원	369억원
주요 사업	여성가족 정책 연구·개발 여성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 활동 강화사업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등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복지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복지 분야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 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지역문화의 육성 지원 및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공익목적 공연 해외공연 판매공연 (정기공연, 기업공연 등) 문화예술 교육사업 음반 녹음, 발매	디자인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패션봉제산업 육성 디자인기반사업 운영 서울시민디자인 연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구 분	장 학 재 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 지 털 재 단	120다산콜재단	
설립 목적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장년층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디지털 서울 구현을 위한 혁신그룹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 수행 -디지털 산업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설립 근거	-민법32조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일	'09. 1. 8.	'15. 3. 12.	'16. 4. 28.	'16. 5. 25.	'17. 4. 24.	
대 표 자 (임기)	유광상(54년생) ('18. 9. 27. ~ '20. 9. 26.)	김영철(57년생) ('18. 3. 5. ~ '21. 3. 4.)	김영대(60년생) ('16. 3. 9. ~ '19. 3. 8.)	고한석(63년생) ('16. 6. 1. ~ '19. 5. 31.)	김민영(67년생) ('17. 4. 19. ~ '20. 4. 23.)	
조 직	1사무국 2부	2국 6팀	1국 1본부 3캠퍼스	1실 1본부 4팀	2본부 12팀	
정원내	정원	13명	27명	103명	30명	420명
	현원	10명	27명	89명	24명	406명
정원외	무기	-	2명	-	-	12명
	기간제	-	18명	7명	3명	-
	단시간	-	1명	-	1명	-
이사	정원	11명	13명	10명	8명	10명
	현원	11명	7명	7명	7명	9명
감사	정원	2명	2명	2명	2명	1명
	현원	2명	1명	2명	1명	1명
'19 예산	본 예산	119억원	96억	153억원	85억원	212억
	추경 예산	-	-	-	-	-
서울특별시	~'18 (누적액)	1,185억원	127억원	305억원	198억원	358억원
	'19	111억원	56억원	142억원	82억원	201억원
주요 사업	-대학분야 장학사업 -공익인재분야 장학사업 -고교/하나고 분야 장학사업 -재능분야 장학사업 -서울평화희망장학금 -기타지정기탁 장학사업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조정 -소외계층 평생교육	-장년층 인생재설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조사·분석 및 관련 사업 개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제공 등	-서울디지털 경제 육성 -디지털산업 지원 -디지털 서울구현 및 디지털 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정·구정 상담 제공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상담 전문인력 양성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 운영 및 관리	

구분	공공보재	기술연구원	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설립목적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 운영 효율화, 질향상 지속 강화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자원·분야간 연계협력 강화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 도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시경쟁력 확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	
설립근거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설립일	'17. 7. 6.	'18. 3. 27	'18. 4. 23	19.2.28	
대표자(임기)	이영문(62년생)	고인석(59년생)	이재성(59년생)	주진우(64년생)	
	('17. 7. 24. ~ '20. 7. 23.)	('18. 10. 10. ~ '21. 10. 9)	('18. 4. 23. ~ '21. 4. 22.)	('19. 3. 11. ~ '21. 3. 10)	
조직	3부 1실	2본부 7실	4본부 1실		
정원내	정원	30명	75명	132명	572명
	현원	27명	38명	58명	1명
정원외	무기	-	-	-	-
	기간제	4명	-	90명	-
	단시간	-	-	-	-
이사	정원	10명	10명	16명	10명
	현원	9명	8명	9명	9명
감사	정원	1명	2명	2명	2명
	현원	1명	2명	1명	2명
'19 예산	본 예산	41억원	126억원	363억	81억
	추경 예산	-	-	-	-
시출연금	~'18(누적액)	65억원	68억원	150억원	-
	'19	37억원	109억원	361억원	81억
주요사업	-싱크탱크로서 정책연구 및 평가 -서울 공공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 -예방중심 공공보건의료 구현,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예방중심 공공보건의료 구현,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보건의료 자원개발 및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도시인프라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재난재해에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연구 -시민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미래 선진도시 견인을 위한 혁신융합 연구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 6.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